

제126호(2016. 6. 2.)

농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개선

국승용 최지현



1.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국내 기능성식품산업	1
2. 건강기능식품과 식이보충제, 어떻게 다른가?	5
3. 농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의 문제점	8
4. 농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개선	14

감 수	김용렬 연구위원	061-820-2363	kimyl@krei.re.kr
내용 문의	국승용 연구위원	061-820-2275	gouksy@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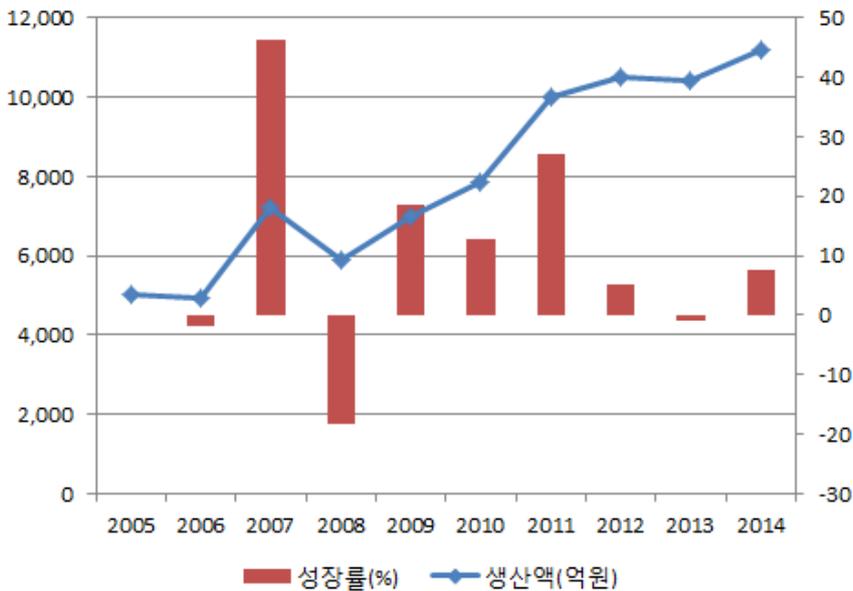
- 우리나라 식품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로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 낮으며, 최근 성장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홍삼제품 등 주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도 활발하지 않음.
 - 반면, 세계 기능성 식품 시장은 최근 7% 내외의 빠른 성장을 하였으며, 7%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엄격한 사전 인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엄격한 규제가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 미국, 일본 등의 나라도 안전성과 기능성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제도와 유사한 엄격한 사전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사전 승인 제도와 함께 제조업자 책임하에 식품의 기능성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신고 제도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이 경우 기능성에 대한 입증 의무와 안전성 관리는 제조업자가 책임지며 정부 기구가 이를 관리·감독함.
 -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은 홍삼제품의 비중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다양하지 못함.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위축되는 반면,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식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가 늘고 있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법령 내에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식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능성 식품 표시제 도입이 필요함.
 - 새로운 기능성 식품 표시제 도입 시 허위·과장 표시,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또는 식품산업진흥법령 내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함.
 - 현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는 규제는 없으나, 표시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어 농가가 기능성을 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법령에 위배될 우려 없이 농가가 농산물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침의 마련이 필요함.

1.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국내 기능성식품산업

□ 식품산업보다 성장률이 낮은 기능성식품산업

- 기능성 식품은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05년 이후 연평균 9%대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함. 하지만 최근 건강기능식품¹⁾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12년부터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9%에 불과함.
- '12년 식품산업은 전년 대비 7% 성장하였으나 건강기능식품산업은 5% 성장하였고, 식품산업이 3% 성장했던 '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오히려 1% 감소함. 즉, 건강기능식품의 성장률이 식품산업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건강기능식품 생산액과 성장률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5), 식품의약품산업동향통계.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 속도가
저하되고 있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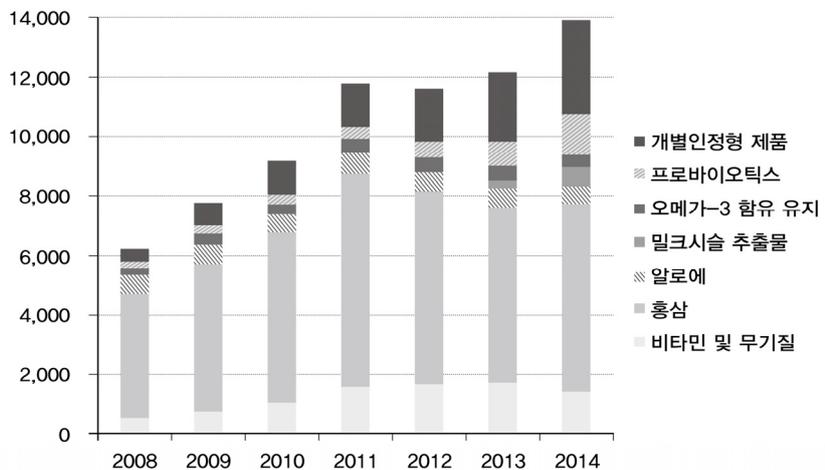
1)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을 의미함. 기능성 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용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인정된 식품만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됨.

“
건강기능식품을
주도했던 홍삼 등의
판매 정체
”

- 비교적 판매 비중이 높은 비타민과 미네랄류, 홍삼제품, 개별인정형²⁾ 제품 등이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였음. 이들 주요 품목의 판매 확대에 힘입어 '09~'11년 기간 동안 건강기능식품 판매액은 매년 10% 이상 빠르게 성장함. 그런데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을 주도했던 홍삼, 비타민, 알로에 등의 판매는 정체·감소하고 있음.

그림 2. 건강기능식품 주요 품목별 판매액 추이

단위: 억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각 연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유행에 민감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은 약 150종의 기능성 원료가 출시되어 있고, 새롭게 개발된 건강기능식품도 지속적으로 출시되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나 밀크시슬 추출물과 같이 새롭게 주목을 받는 기능성 원료의 판매가 최근 비교적 큰 폭으로 성장함. '14년 건강기능식품 총 판매액은 전년 대비 약 1,500억 원 증가하였으나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밀크시슬 추출물 등의

2)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된 원료는 별도의 인정 과정 없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비타민이나 칼슘, 철, 셀레늄 등의 미네랄류, 식이섬유, 홍삼, 알로에,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고시형 기능성 원료임. 새롭게 기능성이 발견되는 등의 이유로 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 업자가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개별업자에 의해 기능성이 입증된 원료로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을 개별인정형으로 분류함. 헛개추출물, 구기자추출물 등이 대표적인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임.

판매 증가액 합계가 약 1,800억 원임. 즉, 기존 주력 제품의 판매는 감소하고, 개별인정형을 포함해 새로운 원료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실적에 의해 시장의 성장이 영향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세계 건강식품 시장은 7% 수준의 성장 지속

-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09년 건강식품 시장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4% 수준에 머문 이후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2012년 세계 건강 관련 식품³⁾ 시장규모는 약 3,464억 달러이고, '11~'12년 기간 7% 수준의 성장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현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품목은 식이보충제(Supplements)이며 세계 시장규모는 약 961억 달러('12년)이고 7% 내외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연도별 세계 건강식품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e)	2014(e)	2015(e)	2016(e)
Supplements*	매출액	803	846	902	961	1,034	1,100	1,179	1,265
	성장률	4.8%	5.4%	6.5%	7.0%	7.6%	6.4%	7.1%	7.3%
Natural/ Organic Food	매출액	782	838	915	1,010	1,116	1,231	1,357	1,490
	성장률	3.8%	7.2%	9.2%	10.3%	10.5%	10.4%	10.2%	9.8%
N&OPC& Household Products**	매출액	285	310	339	374	411	452	496	539
	성장률	5.2%	8.7%	9.4%	10.3%	9.9%	9.8%	9.7%	8.7%
Functional Food	매출액	964	1,009	1,061	1,119	1,180	1,247	1,315	1,383
	성장률	2.3%	4.7%	5.1%	5.5%	5.5%	5.7%	5.5%	5.2%
Total Nutrition Sales	매출액	2,834	3,004	3,217	3,464	3,741	4,029	4,347	4,677
	성장률	3.7%	6.0%	7.1%	7.7%	8.0%	7.7%	7.9%	7.6%

* 식이보충제

** Natural & Organic Personal Care & Household Products

자료: Nutrition Business Journal.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건강기능식품협회, 2014)" 에서 재인용.

3) 식이보충제, 자연·유기식품, 기능강화식품 등 건강·미용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식품.

“

식품산업 중
건강기능식품 비중 2%,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 낮아

”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비중 확대,
해외 건강식품
직접구매 증가



- 세계 식이보충제 시장의 국가별 점유율은 미국(34%), 서유럽(17%), 중국(12%), 일본(11%) 순임. 각국의 식품산업에서 식이보충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5.2%, 일본 4.5%, 중국 2.7%임. '12년 기준 식이보충제 시장은 미국이 전년 대비 7.5%, 중국이 11.7% 성장하는 등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13년 기간 동안 1.9%에 머물고 있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비중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나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성장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수입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수입액의 규모가 최근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11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성장률이 연 4%에 미치지 못했으나 수입액은 5.6%로 비교적 큰 폭으로 성장함.

표 2. 건강기능식품 생산액과 교역액 추이

(단위: 억 원)

구 분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2011	9,995	556	3,743
2012	10,525	585	3,550
2013	10,420	754	3,863
2014	11,208	670	4,40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5). 식품의약품산업동향통계.

- 해외 건강식품⁴⁾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14년 건강식품 해외 직구는 2,605천 건으로 전체 직구의 16%(1위)로 나타남.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 수입과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소비는 확대되고 있음.

4)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건강식품은 국내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수입액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2. 건강기능식품과 식이보충제, 어떻게 다른가?

□ 건강기능식품은 법적 절차를 거쳐 표시허가를 얻은 식품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에 명시된 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표시된 식품을 의미함.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며 기능성은 영양소 기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등으로 구분됨.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기능이 영양소 기능에 해당함.
-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등과 같이 특정 질병의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 있음을 나타냄. 생리활성 기능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과 같이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생리적 작용에 유용한 기능이 있음을 나타냄.
- 생리활성 기능은 1~3 등급으로 구분하며 인과성의 정도가 상이함. 1등급은 특정 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며, 2등급은 특정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고, 3등급은 특정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 적용 시험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함.
- 기능성 원료는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로 구분됨. 고시형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기준과 규격을 고시한 원료로 누구든지 기준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음. 개별인정형 원료는 별도로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등을 인정받아야 하며 인정을 신청한 업체만이 해당 원료를 사용할 수 있음.
- 개별인정형 원료가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능성, 안전성 등에 대한 임상실험을 거치고 그 결과를 인정받아야 함. 개별인정의 경우 업체와 원료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4년 내외의 시간, 5억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

“

건강기능식품은
엄격한 사전인정을
통과한 식품,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이보충제에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어

”

“

건강기능식품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식이보충제라는 용어 사용

”

- 건강기능식품은 정부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증’하지는 않되, 생산자가 수행한 임상실험과 안전성 검사가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지를 ‘인정’하는 체계로 운영됨. 즉, 정부가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 다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실험과 검증을 실시해야 함.

▣ 기능성 식품 전반을 포괄하는 식이보충제

- 우리나라에서 식이보충제는 법적인 용어가 아님.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능성 식품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로 식이보충제 또는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이 사용됨. 우리나라에서 기능성 식품과 관련된 제도적 용어는 건강기능식품이 유일하며 해당 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에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국민영양조사의 문항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이보충제’ 복용 경험에 대한 문항이 있음. 이는 관련 기관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범위가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 법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만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이지만 법적 건강기능식품 이외에 국민들이 기능성이 있을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는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적 용어임. 식이보충제는 비타민, 무기질, 허브 등 식물성분, 아미노산, 식사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 농축물, 대사산물, 구성요소, 추출물 혹은 이에 포함된 성분 등의 원료를 함유한 제품을 의미함. 유럽에서는 미국의 식이보충제와 유사한 식품보충제(Food Suppl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미국 식이보충제의 건강 강조 표시(Health Claim)는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관한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부기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함. 이 밖에

구조/기능 강조 표시(Structure/Function Claim)는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시하고 시판 후 30일 이내에 정부기관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또한 영양소 함량 강조 표시(Nutrient Content Claim)를 통해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의 양을 표시함.

- 미국의 식이보충제는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건강 강조 표시 식품과 우리나라에는 관련 제도가 없는 구조/기능 강조 표시 식품을 포괄함. 즉, 미국의 식이보충제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식이보충제, 건강보조식품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능성 식품 관련 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가 승인한 기능성 식품을 특정 보건용 식품과 영양기능식품으로 구분하고 있음. 특정 보건용 식품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생리활성 기능에 대응하고 영양기능식품은 영양소 기능에 대응함. '15년부터 사전 신고를 통해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판단됨.



미국, 일본 등은 기능성에 대한 표시 수준을 달리하여 엄격한 사전 승인 제도와 간단한 통지·신고 제도 병행



표 3. 기능성 식품 개념과 표시에 대한 제도 비교

	한국	미국	일본
명칭	건강기능식품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	보건기능식품/기능성 표시 식품
표시	영양소 질병 발생 위험 감소 생리 활성	(제한적) 건강 강조 구조/기능 강조 영양소 함량 강조	특정 보건용 영양 기능 기능성 표시
승인	고시 또는 사전 승인	(제한적) 건강 강조는 사전 승인 구조/기능은 사후 통지	특정 보건용·영양 기능은 고시 또는 사전 승인 기능성 표시는 사전 신고

□ 과도한 건강기능식품 규제가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어

- 외국에서 식이보충제로 판매되고 있는 식품도 국내에서 그 성분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할 수 없음. 즉, 해외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이라도 국내에서는 기능성을 표시하여 판매할 수 없음.

“

건강기능식품법령의
과도한 규제에 의한
산업의 위축 우려

”

- 외국과 비교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이 더디고 식품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낮은 것은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사전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사후 통지 또는 사전 신고 방식으로 완화된 내용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보건 당국 입장에서는 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 반면 식품산업 입장에서는 이미 기능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거나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기능성이 입증된 식품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또한 소비자는 정부가 인정한 기능성 식품을 포함하여 식품의 기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미국과 일본은 이처럼 다양한 입장을 수용하기 위해서 비교적 엄격한 사전 승인 제도와 상대적으로 완화된 표시 제도를 병행하는 기능성 식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농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의 문제점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이보충제에 대한 표시 제도 미비

- 법적으로 식품의 기능성은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으나 식이보충제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기능성 식품을 건강기능식품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 이외의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이보충제에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음.
- 한방 등 임상을 통해 기능성이 입증된 농산물이나 원료 성분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음.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년간 수억 원의 개발비가 소요됨. 해외에서 새로운 기능성 원료가 개발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를 기능성 원료로 고시하지 않으면, 개별 업체가

이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개별인정을 받아야 함. 이 같은 비용 때문에 중소기업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참여하기 어려움. 이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개발비가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건강기능식품 관련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의 출시나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기능성 식품 시장 비중이 높지 않음에도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일 수 있음.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식이보충제 구매가 확대되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다 할 수 없음.
- 2014년 기준 454개 건강기능식품 업체 중 매출액 10억 원 미만 업체의 비중이 74%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26개 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 총 매출액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음.
- 또한 건강기능식품 품목 기준으로 홍삼제품의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특정 제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라는 우려도 있음.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은 약 3,177억 원 규모이나 원료수가 약 175종, 제품수가 1,153종에 달해 제품당 평균 판매액은 약 2.8억 원에 불과함.
- 미국은 1994년부터, 일본은 2015년부터 사후 통지 또는 사전 신고 방식으로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는 태블릿이나 캡슐처럼 식이보충제 형태의 식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식초 등의 일반식품, 무알코올 맥주와 같은 음료 등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협소한 해석

-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에 의하면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정의됨.

“

건강기능식품법령에 의한 기능성의 의미 지나치게 협소, 홍삼제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취약한 산업구조

”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가능성에 대한
정의 모호

- 법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고시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의 별표에서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1~3등급으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인정 등급 및 내용을 규정함.
-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식품정책과는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www.foodnara.go.kr/hfoodi/main/main.jsp)를 통해 생리활성 기능으로 31개 기능성⁵⁾을 제시하고 있음. 이처럼 기능성을 31개로 한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기능성을 규정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인지 관행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음.

표 4. 생리활성 기능(2014. 11. 30.)

번호	기능성 분야	번호	기능성 분야	번호	기능성 분야
1	기억력개선	9	관절/뼈건강	17	칼슘흡수 도움
2	혈행개선	10	전립선건강	18	요로건강
3	간건강	11	피로개선	19	소화기능
4	체지방감소	12	피부건강	20	항산화
5	갱년기여성 건강	13	콜레스테롤 개선	21	혈중중성지방개선
6	혈당조절	14	혈압조절	22	인지능력
7	눈건강	15	긴장완화	23	운동수행능력향상 / 지구력 향상
8	면역기능	16	장건강	24	치아건강
25	배뇨기능 개선	26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	27	갱년기 남성건강
28	월경 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	29	정자 운동성 개선	30	유산균 증식을 통한 여성의 질 건강
31	어린이 키성장 개선				

자료: KFDA 건강기능식품(<http://www.foodnara.go.kr/hfoodi/main/sub.jsp?pageCode=9>: 2016. 5. 12.).

- 소비자 또는 건강기능식품 개발자는 식품의 기능성을 법령과 같이 포괄적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아니면 주무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와 같이 31개 항목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움. 또한 관련 제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31개 기능성 외에 생리활성 기능성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5) 홈페이지의 설명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로서 31개의 기능성(아래 표 참조)이 있습니다’로 되어 있음.

- 미국의 사후 통지 제도인 구조/기능 강조 표시제하에서는 ‘심장병의 주요 요소인 혈청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현미).’, ‘리코펜 성분은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심장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항산화제로 노인 황반 변성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줍니다(토마토).’ 등의 표시가 가능함(이용선 외 2009, 농어업·농어촌 미래전략과제 정책화 방안 연구).
-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를 활용하여 ‘본 제품은 쌀 유래 글루코 실 세라마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쌀 유래 글루코실 세라마이드는 피부의 보습력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피부 토닝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L-세린이 포함되어므로, 수면의 질 향상(잠들기 개선, 숙면 느낌 개선, 기상 시의 만족감)에 도움이 됩니다.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수면 불만을 가진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본 제품은 GAB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ABA는 사무적인 작업에 따른 일시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 제품에는 루테인·아스타잔틴, 시아니딘-3-글루코시드, DHA가 포함되어므로 손의 초점 조절 기능을 돕고 눈의 사용에 의한 어깨, 목덜미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등의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이나 일본의 기능성 표시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기능성을 31개 항목으로 제한하는 등 건강기능식품법령의 기능성 표시가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관한 제도는 없어

-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은 음식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됨. ‘식의동원(食醫同源)’, ‘식의약동원(食藥同源)’ 등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음식을 통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그런데 기능성 식품에 대한 논의는 일반 식품과는 외형상 구분되는 식이보충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은 사후통지로,
일본은 사전신고로
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운영

”

“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제도는 없으나
허위비방·과장 표시는
처벌될 수 있어

”

-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한다’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이 정의에 따르면 농산물은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될 수 없으며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음.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의하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는 할 수 없음. 다만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허위표시나 과대광고 예외 규정에 해당하여 허위표시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제3조), 사업자는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요구할 수 있음(제5조). 즉,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가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실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음. 그런데 표시의 내용과 실증의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식품산업진흥법」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우수식품인증 등의 조항은 있으나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최근(16. 4. 2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예고한 「식품표시법안」에 의하면 식품에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고(제12조), 식품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의(동 법안 제2조, 「식품위생법」 제2조)하고 있음.

<식품위생법령의 표시 관련 규정>

○ 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총리령)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중략)...

②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중략)...

2. 영 제2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후략)...

○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중략)...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検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후략)...

“

농산물과 제조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
개선 필요

”

- 미국의 FDA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조/기능 강조 표시에 대한 산업 가이드라인(Guidance for Industry: Structure/Function Claims,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을 통해 관련 법령의 의미를 해석하고 다양한 조건을 나열하면서 표시 가능 또는 불가능한 내용과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요약하면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령이 없어 자율적 표시가 가능하나 입증 책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능성 표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입법예고된 식품 표시법이 시행될 경우 기존 법령과 달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4. 농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개선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제조 식품을 「건강기능식품법」에서 관할하며 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기능성 표시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일본이나 미국은 하나의 제도 내에서 제조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일괄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제조식품과 농산물을 구분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와 표시에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에서는 농산물을 표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농산물의 품질과 표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제조식품을 관할하는 건강기능식품법령과 농산물을 관할하는 법령을 모두 개선해야 농식품 전반의 기능성 표시 제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기능성 원료와 성분의 확대, 인정 절차 개선

- 2016년 4월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소 28종, 기능성 원료 60종 등 총 88종의 성분을 기능성 원료로 고시함. 최근 수년간 고시형 원료의 종류는 별다른 변화 없이 88종이 유지되고 있음.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체계에 의해 고시형 원료 추가에 따른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개발은 기대하기 어렵고 새로운 원료나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은 개별인정형으로 출시될 수밖에 없음.
- 해외 직접구매 등 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변화되고 있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가에서 기능성을 승인받은 성분에 대해, 업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심의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고시하는 등 기능성 원료와 성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국내 식품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개별인정 절차의 정비가 요구됨. 관계 당국에서는 정부가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고시 등 지침에 따라 개발한 원료를 ‘인정’하므로 민간의 자율성이 강화된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 일부 기업은 일반적으로 타 인증 제도에서 정부가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인정’은 그 절차상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하여 허가보다 엄격한 규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기능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원료의 고시를 확대하고 개별인정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기능성 표시 제도 도입

- 기능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기능성 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기능성 식품의 사전 승인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음. 임상실험 등을 통해 기능성 식품 섭취와 건강 개선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심의하고 이를 인정하는 현행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근간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
개선 필요

”

“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신고만으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 미국, 일본 등은 기능성 원료의 사전 승인 제도와 별개로 식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정한 기능성을 가진 식품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기능성 식품의 구매를 원하고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신뢰할만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판매 개시 후 30일 이내 통지를 하도록 하면서 제조업자가 기능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 기준과 입증의 내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보유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판매 60일 이전에 표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 과정에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상담하고 문제를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도입이 필요함. 미국과 같이 기능성 식품을 관리하는 법령(건강기능식품법령) 내에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새로운 기능성 식품 표시제 도입 시 허위·과장 표시,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기존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새로운 시장 창출에 의한 기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위축을 우려할 수 있음.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순기능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함.
-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 제도 도입

- 현행 제도하에서 농산물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으며, 다만 허위·과장·비방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사후 규제를 받게 될 수 있음.
- 농산물의 생산단위는 농가인데, 농가 차원에서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고 과학적 근거를 찾아 적절한 표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음. 또한 관계 당국에서 표시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 현행 제도하에서는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가 활성화되기 곤란함.
-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FDA와 같이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농산물에 대한 표시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 문안을 작성·배포하는 것이 필요함. 누구든 농산물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될 우려 없이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기능성이 발견된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는 농산물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소비자청은 기능성표시 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미국 FDA의 표시 가이드라인이나 표시 표준 문안,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신고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의 제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또는 식품산업진흥법령 내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 관련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입법 예고한 「식품표시법」은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던 표시규제의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라는 정부의 규제 개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식품위생법」에서와 같이 「식품표시법」에서도 농산물을 표시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

”



2016년

-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윤정)
-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현)
-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2015년

- 제11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호 김치의 한·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최병옥, 노호영)
- 제110호 주요 농림축산물의 2015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 제109호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호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현)
-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유정현)
-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발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욱,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KREI 농정포커스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개선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6. 6. 2.
발 행 2016. 6. 2.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조미형, 한석호,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02-2269-5523~4 dec5523@hanmail.net

ISBN: 978-89-6013-896-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